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선배 ·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최재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늘봄학교 운영 중인 공립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도 간식을 제공하고 이를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에 의거해 공립 특수학교 수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사립 특수학교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함으로써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늘봄학교 간식 지원 대상의 적용 범위를 공립 초등학교와 공·사립 특수학교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감은 특수학교 학생의 건강과 특성을 고려해 간식의 종류, 제공 방식 및 위생·안전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